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70호
----------	--------

제출년월일 2026. 7. 8.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국가정보원의 통합방위협의회 명칭변경에 따른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구성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6호)
 - (현행) 국가정보원 김포지역 관계자 → (개정)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 나.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4. 7. ~ 4. 27.(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국가정보원

나) 경 기 도 : 비상기획담당관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6호 중 “김포지역 관계자”를 “통합방위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여”를 “소집하여”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난안전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재난안전과장 류 규 형
	팀장 직위·성명	민방위팀장 이 승 묵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김 세 진(☎236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	
1. ~ 3. (생략)			-----	
4. 통제구역 설정			-----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	
<u>안건</u>			-----	
제3조 (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3조 (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② -----		
정한 사람으로 한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정보원 <u>김포지역 관계자</u>		6. ----- <u>통합방위담당관</u>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		제6조 (회의) ① -----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한 경우 <u>또는 재적위원 과반</u>		-----		
<u>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u>		-----		
<u>집하여</u> 개최한다.		----- <u>소집하여</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삭 제>		

사항)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항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
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
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
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
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내 대한 대민 의료봉
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군부대 거부
대책(장애물 설치 등)에 부합되도
록 협조·보완한다.

가. 작전책임부대장과 긴밀한 협
조

나. 개활지 책임지역 통합방위 체
계 작동상태 유지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 협의회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① 중앙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지역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시·도지사등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6.12.30>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김포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김포시의회 의장
2. 김포경찰서장
3.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4. 관할김포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보병여단급 부대의 장 <개정 2023.4.12.>
5.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장 <개정 2023.4.12.>
6. 국가정보원 김포지역 관계자
7. 인천보훈지청장(개정 2016.3.9)
8. 김포소방서장 <신설 2016.12.30>
9. 김포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12.30>
10. 향토방위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장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제3조제2항제8호에서이동 2016.12.30)

③ 협의회는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효과적인 통합방위 지원체계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비상대비 담당간사 : 총무 및 민방위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장
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 및 홍보업무 담당부서장

④ 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그중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협의회 의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위원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등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4.12.>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읍·면·동장 소속하에 시, 읍·면·동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 <개정 2016.12.30, 2024.3.27.>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9.30)

나. 상황실은 실장과 각 분야별 지원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4.12., 2025.12.31.>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12.30>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2. 읍·면·동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15.9.30)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12.30>

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한 공무원이거나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라.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3.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9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내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군부대 거부대책(장애물 설치 등)에 부합되도록 협조·보완한다.

가. 작전책임부대장과 긴밀한 협조

나. 개활지 책임지역 통합방위 체계 작동상태 유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2015.9.30]

인쇄 : 김세진 / 재난안전과 (2026-03-08 17:35:50)



국 가 정 보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1. 貴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와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 나.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및 同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통합방위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명칭 변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개정(명칭 변경)

구분		~을	~으로
도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정보담당 간사 명칭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대공수사처장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통합방위 담당 과장
31개 시·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국가정보원 관계자·담당관 등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나. 조례 개정 완료 시기 : 2026.6.30까지

4. 아울러 조례 개정 前까지는 院 위원 명칭을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통합방위담당과장’ 및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합방위협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上 院 위원 명칭 현황

문서관리카드 안전기획관-27599 1/2

부. 끝.

국 가 정 보 원 장



수신자 경기도지사(비상기획담당관), 수원시장(재난대응과장), 성남시장(총무과장), 의정부시장(자치행정과장), 안양시장(안전정책과장), 부천시청(행정지원과장), 광명시장(안전총괄과장), 평택시장(자치행정협력과장), 동두천시장(자치행정과장), 안산시청(시민안전과장), 고양시장(시민안전담당관), 과천시청(안전재난과장), 구리시장(안전총괄과장), 남양주시청(시민안전관), 오산시청(안전정책과), 군포시장(안전총괄과장), 의왕시장(자치행정과), 하남시장(안전정책과장), 용인시장(안전정책과), 파주시청(안전총괄과장), 시흥시장(시민안전과장), 이천시청(안전총괄과장), 안성시장(시민안전과), 여주시청(시민안전과장), 김포시장(안전기획관), 화성시장(안전정책과장), 광주시장(재난안전과장), 양주시청(시민안전과장), 포천시청(시민안전과장), 연천군수(안전총괄과), 가평군수(안전총괄과장), 양평군수(안전총괄과장)

담당자 2025. 12. 15.

안

협조자

시행 경초-585

(2025. 12. 15.)

접수 안전기획관-27599

(2025. 12. 15.)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비공개(2)